

정 관

주식회사 피에스택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피에스택(이)라 한다.

제 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전자제품 제조업
1. 전자부품 및 핸드폰 부품 도금업
1. 전자부품 및 핸드폰 부품 무역업
1. 부동산임대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조(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내에 둔다.

단, 이사회가 결의로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 방법은 경기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경기일보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5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00주로 한다.

제 6조(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 7조(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당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3. 이사회는 매 주식 발행 시에 정관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각 주식의 권리 내용과 범위를 달리 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처럼 권리 내용과 범위, 효력 등이 달리 정해진 주식은 그 한도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4. 당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8조의 2 (배당우선주식)

1.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배당우선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 ①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 ②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이므로 할 수 있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당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발행시 이사회에서 신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다.
 - ⑤ 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5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동수의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제8조의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1.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의 주주는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3.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4.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조의 4 (의결권배제주식)

1. 당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범위 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하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배당우선주식을 전항이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위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제8 조의 5 (전환주식)

1.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또는 제8 조의 3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 및/또는 제8조의4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해당주식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 으로 정할 수 있다

2. 전환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①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기타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시 이사회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주주권의 희석 방지 관례를 감안하여 정하는 희석방지 조항에 의하여 전환비율은 조정될 수있다.

②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할 수 있는 기간 은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또는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배당기산일 규정을 준용한다.

3. 회사가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온 주식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 6 (상환주식)

1. 당 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배당우선주식 및/또는 제8조의3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우선 주식 및/또는 제8조의4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해당 주식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의해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 으로 정할 수 있다

2. 상환주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한다.

①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상환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청구기간 이전에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에 상환하되, 기배당분은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단, 상환기일은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④상환청구기간 최종일에 상환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상환하는 날까지 상환청구기간이 연장된다.

⑤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춤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주춤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⑦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주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상환한다.

3. 제8조의5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의 7 (제1종 우선주식의 내용)

1. 제8조의 2 내지 6에 따라 회사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전환권을 내용으로 하는 전환우선주식(이하 "제1종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제1종 우선주식에 관하여는 본조 및 제8조의8, 9에 따르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의2내지6에 따른다.

2. 제1종 우선주식은 1주당 i 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3. 회사는 주식의 분할과 병합 또는 주식배당을 행하는 경우 보통주주와 우선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과 방식 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을 적용하여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단 보통주주에게는 보통주식으로써, 우선주주에게는 동종의 우선주식으로써 실시해야 한다.

4.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주에 대해서는 그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가 보유한 우선주식과 동일한 종류와 내용의 주식으로써 신주를 배정 또는 발행한다. 여기서 "지분율"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의미한다.

5. 제1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8조의8 제2항, 제8조의9를 전제로, 그에 상충되지 않는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8조의 8 (제1종 우선주식의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1.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와 동등하게 이익배당을 받는다. 이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배당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2. 회사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주주는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우선주주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다음과 같이 우선적으로 분배받는다.

1)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ㄱ) 발행가액과 (ㄴ)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분배한다. 단, 배당결의가 있었으나 미지급된 배당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변제받는다.

2) 잔여재산이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전부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각 우선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분배한다.

3) 우선주주들에 대한 우선분배액을 지급하고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재산은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분배받는다. 이 경우 제1종 우선주식은 분배기준일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의제하고 그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를 받는다.

4) 회사가 제3자에게 영업 또는 자산(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도등"이라 한다)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때에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그 결의시에 자동 해산되며, 이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는 1)목 내지 3)목에 따른다.

5) 본항의 적용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금전 이외의 유가증권인 경우 그 분배는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의 공정가격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 코스닥시장 기타 우선주주들이 인정(발행된 제1종 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서면으로 인정하여야 함)하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분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거래일전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그 이전 30일 동안의 가중평균 증가

(2) 그 외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장외시장의 거래량과 거래가격 기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격. 단, 발행된 우선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우선주주들이 이사회에 가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국내 4대 회계법인 중에서 회사가 선정하고 그 반대주주들이 승인하는 2개 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값으로 한다. 만일 회사가 반대주주의 이의제기시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법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

주주들이 이를 선정한다. 위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제1종 우선주주는 청산하는 주요자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매각조건과 동등한 조건하에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③본조 제2항의 목적상 회사의 해산사유라 함은 다음의 각 목의 사유를 말한다.

1) 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x)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부 주식총수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흡수합병, 인적분할합병, 주식양도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신설합병, 인적분할의 경우)의 의결권부 발행 주식 또는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y) 회사가 당해 거래 직후 존속법인(물적분할합병의 경우) 또는 신설법인(물적분할의 경우)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지식재산권 포함)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도 등 하는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3) 회사의 신주발행 및/또는 주주의 구주 매각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의 양도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의 목적상 '경영권의 양도' 라 함은 양수인이 그 처분거래의 결과 회사 발행의 지분증권 총수(주식연계증권의 경우는 매각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당해 증권이 주식으로 전환, 행사 또는 교환된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의 50% 이상을 직 · 간접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거나, 회사의 재직이사 과반수 또는 대표이사를 지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거래를 말한다.

4) 기타 법률 및 정관에 정해진 회사의 해산사유

제8조의 9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권)

1. 우선주주는 그 선택에 따른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 대가의 지급 없이, 제1종 우선주식을 본조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본점 또는 제1 종 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완전히 납입되고 추가 납입의무가 없는 회사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전환비율 및 전환주식의 수: 전환비율은 제1 종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을 전환 당시의 유효한 전환가격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이다. 전환권이 행사된 주식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한 주식 수를 전환주식의 수로 한다. 단, 제1 종 우선주식의 권면 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3. 전환가격: 최초의 전환가격은 제1종 우선주식의 주당 발행가격으로 한다. 전환가격은 이하 본조 제8항에 기재된 바에 따라 조정되나, 조정된 전환가격은 액면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단, 회사는 제1종 우선주식 전체의 2/3 이상을 보유한 우선주주들의 서면 동의가 없는 이상, 전환가격이 액면금액 이하로 되는 추가주식의 발행, 자본재조정, 합병등을 실시할 수 없다).

4. 전환청구기간: 전환청구기간은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10년 동안으로 한다

5. 전환의 절차: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에 있어 보통주식의 단주는 발행되지 아니한다. 회사는, 해당 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단주를 대신하여, 동 단주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보통주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한다. 우선주주는 제1종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식의 주권을 교부받기에 앞서, 제1종 우선주식의 주권에 적법하게 배서하여 이를 회사 또는 제1종 우선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아울러 자신이 제1종 우선주식을 전환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회사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주권을 제출 받은 후 가능한 신속하게 (i) 회사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소에서 우선주주에게 해당 보통주의 수에 해당하는 주권을 발행 및 교부하고, (ii) 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지급할 현금을 지급한다.

6. 전환의 효력발생: 제1종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을 위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주권이 제출된 날의 영업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제1종우선주식의 전환에 따라 보통주식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위 전환일 현재 해당 보통주식의 등록된 주주로 간주된다. 다만,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전환이 이루어진 후에는 전환된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선주주희 모든 권리(제1종 우선주식 주권의 제출에 따라 보통주식을 지급받고, 동 전환시 보통주의 단주를 대신하여 현금을 수령하며, 해당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하여 이미 결의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는 제1종 우선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중지되며, 전환된 우선주식은 그 전환 이후에는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행되어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7. 자동 전환: 전환청구기간의 종료일까지 전환청구되지 않는 전환우선주식은 당시의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자동 전환된다.

8. 전환가액의 조정: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환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수시로 조정된다.

①주식분할, 주식병합, 주식배당, 자본조정, 주식의 재분류, 신설합병, 흡수합병, 회사분할, 자본감소 등(이하 "합병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합병 등 직전에 제1종 우선주식이 전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우선주주가 수령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우선주주가 이와 관련한 권리 및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합병등이 일환으로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조치(합병등 비율의 조정, 합병등을 인해 교환 발행되는 주식의 조건과 내용의 조정 등)를 취하여야 하고, 합병등에 따라 그러한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추가주식의 발행에 따른 가격조정

1)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그 발행 직전에 유효한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발행이 있을 때마다 제1종 우선주

식의 전환가격은 자동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된다. 신발행주식수는 완전 희석화 기준으로 계산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발행가액} / \text{조정전 전환가액})}{\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2) 위 추가주식은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일 이후 회사가 발행하였거나 발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보통주식을 의미하며, 보통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일체 유형의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옵션,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나(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의 사유로 발행되거나 발행될 보통주식은 제외한다.

(1)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에 의한 경우

(2) 모든 종류의 주식이 동일한 비율로 조정되는 주식분할, 주식배당 또는 회사의 자본금과 관련된 자본조정의 경우

(3) 주식배당, 주식분대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로서 회사의 정관 또는 제1종 우선주식의 발행 당시 정한 전환가격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결의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하는 보통주식, 다만, 이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9. 전환가격조정에 따른 확인서: 전환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즉시 그와 같은 조정에 대한 계산을 하고, 조정의 내용 및 그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상세를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제공한다. 회사는 우선주주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조정의 내용, 당시 유효한 전환가격, 전환신주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 확인서를 우선주주에게 교부한다.

10. 전환시 발행될 주식을 위한 수권자본의 확보: 회사는 기 발행된 모든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이 있는 경우 동 전환에 따라 보통주를 발행하는데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확보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미발행 수권보통주식의 수가 기 발행된 모든 제1종 우선주식의 전환을 실행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러한 전환에 충분하도록 미발행 수권 보통주식의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기준일의 사전 통지 의무 : 회사가 현금 배당을 제외한 이익배당, 그 종류를 불문하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 등 회사로부터 부여되는 일체의 권리를 받을 주주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회사는 우선주주에게 기준일 20일 전에 그 이익배당, 권리의 부여 등을 위해서 결정된 기준일과 이익배당, 권리의 수량 및 성질을 특정하여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10 (제2종 우선주식의 내용)

1. 제8조의 2 내지 6에 따라 회사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우선분배권, 전환권, 상환권, 신주인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전환상환우선주식(이하 "제2종 우선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

다. 제2종 우선주식의 권리와 내용은 본조부터 제8조의15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의2내지6에 따른다.

2. 제2종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존속기간 내에 보통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 전환된다.

제8조의 11 (제2종 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1.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종 우선주식에 대해서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율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2.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3.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종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사항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기간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4. 제2종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배당결의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당해 주식의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5.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있고 투자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서면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상법 제 449조의2, 상법 제46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 승인과 이익배당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 12 (제2종 우선주식의 잔여재산 우선분배권)

1.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①본건 우선주식의 인수가액과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 분배한다.

②제1 호의 금액은 회사가 기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전환우선주 4,000주(이하 "제1종 우선주식") 에 대한 분배금액에 우선하여 분배한다.

③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청산 잔여재산 중 본건 우선주식 및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분배금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종 우선주식의 주주 및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는다.

④회사가 제3자에게 그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행위(이하 총칭하여 "매각 등") 또는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동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는 제1 내지 3호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 제4호의 적용에 있어서 회사가 매각 등으로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가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이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투자자가 공정가액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투자자가 지정한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중 둘 이상의 법인을 지정하여 평가한 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보기로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제1항에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①법정 해산사유 발생일(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주총회의 결의일을 말함)

②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매각, 교환, 현물출자, 양도 기타 처분하는 행위 또는 주요한 지적재산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 제공 기타 처분하는 거래에 대해 이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③회사가 일방 당사자가 되거나 인수합병 거래의 대상이 되는 형태로 관련되는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의 유사한 거래로서 그 거래의 결과 그 직전 발행되어 있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 수가 존속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이 되지 못하거나 또는 그 비율 이상으로 전환 또는 교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가 있는 때 제2종 우선주식의 주주는 제2종 우선주식의 인수가액과 분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누적 배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제1종 우선주식에 대한 분배금액에 우선하여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 8 조의 13 (제 2 종 우선주식의 전환권)

1.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주금납입기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의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2. 전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우선주식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 수,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②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될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제출

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④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당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3.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①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②회사가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③본건 우선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투자자가 보유한 본건 우선주식과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N_i = B_i \times \{(A_c/B_c) - 1\}$$

N_i :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무상지급 되는 우선주식수

B_i : 발행 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 보유 우선주식수

B_e : 발행 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A_c : 발행 후 회사 발행주식총수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④회사가 타사와 합병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평가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⑤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⑥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⑦본건 우선주식의 투자 이후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 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4.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점 우선주식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5. 기타: 전환주식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6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 14 (제2종 우선주식의 상환권)

1.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상환조건: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의 존속기간까지 본건 주식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하기로 한다.

3. 상환방법: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의 상환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상환하기로 한다. 단, 주주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상환을 할 수 있다.

4. 상환금액: 주당 상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일 다음 날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 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본건 우선주식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5. 지연배상금: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에게 상환가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3항에 따라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 의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상환청구 의 경합: 회사가 같은 일자에 2인 이상의 우선주식의 주주로부터 상환청구서를 받은 경우 이들 주주간의 상환 순위는 동순위로 한다. 이와 같이 상환청구가 경합하고 그 상환가액의 총액이 상환재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의 효력은 상환재원을 각 그 청구대장 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에 상응하는 수의 주식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주식수에 대한 상환청구는 무효로 한다.

7. 상환기금의 적립: 회사는 본건 우선주식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주식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익금의 처분시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을 실시한 이후 잔여 이익금의 100%를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에 우선하여 위 우선주식의 상환에만 총당할 수 있는 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8조의 15 (제2종 우선주식의 신주인수권)

1. 제2종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기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

다 .

제8조의 16 (우선주식 간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제1종 우선주식과 제2종 우선주식은 우선순위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동등한 순위를 가지며, 이 경우 보유한 주식 수에 따른 비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9조(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주금 1000원에 대하여 1원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 ①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④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약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⑥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 ⑦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⑧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전략적 제휴 연구개발, 생산관메자본제휴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 ⑨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 필요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9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회사가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경영상 및 기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 10조의1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회사가 유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2조(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 회사는 주주명부의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12조의1 (명의개서 대리인)

1.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제14조(주권의 재발행) ①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①본 회사는 영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가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본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사 채

제18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전환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전환사채의 총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생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20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기술도입 필요에 의하여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2조(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3조(소집통지)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총회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다. 단,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등기된 공고방법에 따라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0이상의 수로 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은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2.수권자본의 증가

3.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또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

4.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1 이상의 양수

5.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6.자본의 감소

7.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8.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④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의결권등) ①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제29조(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본 회사의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감사의 선임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선) ①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 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 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임기와 같이 한다.

③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제3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 하되 이사회에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3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업무집행) ①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등이 대표 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7조(이사회) ①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하고 또는 필요할 때에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이사회내의 위원회) ①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내에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9.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0.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1.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2. 이사의 겸업허용
13.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4.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5.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이사회
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이사회 결의) ①이사회 결의 방법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단,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의 찬성으로 정한다.

②이사회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이사회 의사록) ①이사회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사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44조(영업년도) 본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회일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②제1항의 서류는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총회 2주 전부터 본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6. 임의 적립금

제47조(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며, 매결산기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위와 같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화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9조(배당금지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 칙

제50조(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1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의 시점은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발기인의 성명, 주소등) 본 회사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의 기재와 같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다.

2020년 02월 14일

주식회사 피에스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107-20(성곡동)

대표이사 윤홍상